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2203779)	2024. 9. 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7. 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이상식의원 (2204039)	2024. 9. 1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7. 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9. 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9. 25.)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u> ①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